

CCTV 영상정보 내부관리계획

결 재	담 당	시 설 장
		

2025

한울공동요양생활시설

● CCTV 설치운영에 따라 당 시설에서는 아래와 같이 CCTV 영상정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

- 아 래 -

1. 설치목적 :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 2(폐쇄회로 텔레비전의설치 등) 3항 등에 의거하여 설치하며 수급자의 안전 및 노인학대방지 등의 목적을 위해 설치한다.

2. 관리책임자 및 운영담당자

- 관리책임자 : 시설장 안지만
- 운영담당자 : 간호조무사 / 대표 권태린

3. 영상정보 저장장치 점검주기 및 보관방법

- 영상정보 저장장치의 점검주기는 매월 1회를 기본으로 하고 장치기기 및 기기의 설치장소는 항상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정보의 유출을 예방, 방지한다.

3.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

- 카메라 수량 : 총 8대
- 설치위치 : 입구 현관 1대, 거실 1대, 각 생활실별 1대→ 총 4대, 주방1대, 사무실 1대
- 카메라 성능 : HD급화질→ FHD 1920×1080 화질, 210만화소, 60일이상 저장가능
- 촬영범위 : 시설전체→ 카메라 설치구간 전부

* 예외사항 : 수급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촬영범위에서 제외한다

4. 안내판 규격 및 부착장소

- 안내판 규격 : 29.7×21 (A4용지 사이즈)
- 부착장소 : 시설입구 및 후문(주방쪽문) 각각 부착함

5. 촬영시간

- 일일24시간 365일 실시간 촬영

6. 영상정보 보관기간

- 60일 저장후 자동삭제됨

7. 영상정보 저장장치모델명

- 모델명 : ET20-508

8. 영상정보 열람장소

- 영상기기가 설치된 자료실에서 정해진 절차에 의해 열람가능

9. 영상정보 삭제주기

- 60일 저장후 자동삭제됨

10. 영상정보 열람가능사유

○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 3(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) ①항에 의거하여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만 열람을 인정하고 외에는 영상정보 열람을 금한다.

- 아 래 -

1.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, 신체,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, 절차 및 방법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
2.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, 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
3.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1 등 법령에서 정하는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
4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
5. 그 밖에 노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, 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

11. 영상정보 열람요청시 제출서류

- CCTV 영상물 열람요청서, 비밀유지의무 서약서 등

12. 운영자의 금지행위

영상정보 운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 3(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)

②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과 같은 행위를 금한다

- 아 래 -

1. 제33조의 2 제1항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곳을 비추는 행위

2.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등

한울공동요양생활시설

